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검 토 보 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추진체계 마련〉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7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의 필요성	4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8
2. 주요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9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1
다.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12
라.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4
마.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등	17
바. 실태조사	20
사. 정보의 공개	22
아. 부칙	2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 16.

다. 회 부 일 : 2025. 1. 17.

II. 제안이유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예전부터 사회적 이슈였음.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축매제가 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고착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의 공정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공정성은 재화 분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 대학 입시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소득 등 외부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함.

이에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는 등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헌법상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 바.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교육불평등 지표·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불평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IV.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또한 초래했음. 2023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같은 해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67.1만 원)는 200만원 미만인 가구(13.6만 원)에 비해 4.9배 수준이었음.

<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단위: 만 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가 구 소 득	200만원 미만	10.4	10.3	11.6	12.4	13.6
	200-300만원 미만	17.0	15.8	18.0	20.5	20.6
	300-400만원 미만	23.4	20.4	25.3	27.2	27.9
	400-500만원 미만	30.0	26.9	33.2	35.1	35.3
	500-600만원 미만	35.4	32.5	38.1	39.9	41.2
	600-700만원 미만	40.4	37.2	44.4	46.9	48.4
	700~800만원 미만	46.4	44.1	48.6	51.8	52.7
	800만원 이상	53.9	52.6	59.3	64.8	67.1

자료: 통계청 국가발전지표

또한 거주 지역별로는, 2018년 서울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 32%를 차지했고, 특히 소득 수준이 높고 사교육이 활발한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12%에 달했음¹⁾.

교육의 공정성은 단순한 학습 기회의 문제를 넘어 사회 통합과 개인의 발전에 직결되는 요소임. 특히 대학 입시 및 고등 교육에서 부모의 경제력 등에 따라 학습 환경이 차이를 보이는 현실은, 개인의 노력보다 외부적 요인이 성취를 결정짓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됨. 이는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제정안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²⁾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중·장기적 전략을 갖추고,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신설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교육불평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신설을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육불평등의 실태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교육불평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교육

1)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24.8.27.

2)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본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실효성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기본법」³⁾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계 법령들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기본법⁴⁾을 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소관 분야의 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⁵⁾에서는 ‘교육불평등’을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접근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는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현행 「교육기본법」 제4조⁶⁾에서도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하면서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5)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불평등”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접근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는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6)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교육기본법」의 성별, 종교, 신념, 인종 등의 기준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자 모두 “교육받을 기회”에 있어 차별을 문제 삼고 있는바,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교육불평등이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동일하게 “절차적 평등”을 의미한다면, 두 법률 간의 관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음.

한편, 제정안 제8조에서 교육불평등 지표로 소득분위별 자녀의 진학 및 진로 상황, 임금 격차 등을 포함한 것은 교육의 불평등이 향후 진로와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하고, “결과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실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 교육부: 신중검토

-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합과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함

- 다만, 이미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정의한 교육의 기회균등 개념은 충분히 구체적·사전적이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반면, 제정안은 ‘교육불평등’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경제적 맥락과 개인·집단의 가치관 등 주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교육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하거나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정책적 개입의 범위를 판단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는 「교육기본법」을 토대로 다양한 법령(「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특수교육법」)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고,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법」(‘25.1. 제정)으로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불평등 해소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 일부수정

- 법률안의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는 교육 불평등 해소 관련 기본·시행계획, 수립·추진, 불평등 지표·지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 위원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현재 설치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표 조사·개발 및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지표에 따른 조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교육불평등 지표 개발 시 1. 소득분위별 자녀의 진학 및 진로 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의 진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개인의 진학 사항 등의 수집에 따른 교교·대학 서열화 및 소득별, 지역별 갈등 유발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교육불평등 해소법안」으로, 10개의 본칙,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 본칙(10개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등)	
제9조(실태조사)	
제10조(정보의 공개)	
☐ 부칙(1개 조문)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불평등”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접근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는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입법의 취지와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제정안 제1조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⁸⁾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능력과 의지에 따라 정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

8)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려는 것임.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정의 규정으로, “교육불평등”을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접근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는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9)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열거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달리 차별이 발생하는 사유를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불평등 개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그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였더라도 ‘교육의 기회 또는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는 교육불평등의 개념과 「교육기본법」 상의 ‘교육에서 차별’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교육기본법」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9)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학과 기업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교육불평등이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이고,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 직업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다만, 제정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시책”의 범위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책”도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제5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조(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책과제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시책·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¹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안 제6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지수 및 지표 개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시적 과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0) 국회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p266

라.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6조~제7조)

제정안은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구성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6조(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공개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및 보완 대책에 관한 사항 6.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불평등 해소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통계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6조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제정안 제7조는 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에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통계청장, 광역지자체의 장을 포함한 것은, 교육 불평등 문제를 교육부 독자적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고, 재정·행정·고용·산업·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차관은 재정 지원 및 예산 확보, 행정안전부차관과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정책 집행, 중소벤처기업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 통계청장은 교육 불평등 지표 개발 및 실태 분석을 위한 것으로 해석됨.

유사한 입법례로 「고용정책 기본법」 11)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계획

1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및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안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제3호(제8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에 관한 사항)와 제4호(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별도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조문체계를 맞추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마.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등(안 제8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소득·고용 등의 영역과 연계된 교육불평등 지표를 조사·개발하도록 하고,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교육불평등 지수를 개발·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8조(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소득·고용 등의 영역과 연계된 교육불평등 지표를 조사·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득분위별 자녀의 진학 및 진로 상황 2. 소득분위별 자녀의 임금 격차 3. 소득분위별 자녀의 대학 유형에 따른 일자리 임금 수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불평등 지표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교육불평등 지수를 개발·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소득분위별 자녀의 진학 및 진로 상황, 소득분위별 자녀의 임금 격차, 소득분위별 자녀의 대학 유형에 따른 일자리 임금 수준을 교육불평등 지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불평등의 발생 원인을 소득과 고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서 「과학기술기본법」¹²⁾에서는 정부로 하여

12) 「과학기술기본법」

금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보건법」¹³⁾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앞서 개발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교육불평등 지수를 개발·측정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바, 교육불평등 지수는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 제6조제2항제3호¹⁴⁾에서는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환경보건법」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4) 안 제6조(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설치)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제8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바. 실태조사(안 제9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불평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불평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총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는 사실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조사로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안 제8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제출에 불응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으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에 대한 불응시 별도의 강제수단을 두지 않는 일반적인 입법례¹⁵⁾에 따른 것으로 보임.

15) 「환자안전법」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정보의 공개(안 제10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0조(정보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심의 결과 3.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다음 해 시행계획 4.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5.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 등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

안 제10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들 중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은 매년 갱신이 되는 사항으로 이를 매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기본계획은 안 제4조제1항¹⁶⁾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16) 안 제4조(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는 기간의 주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 제8조제3항17)에서 교육불평등 지수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갱신 주기 또한 기본계획에 준하여 5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지만, 안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비롯한 안 제10조 각 호에서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책과제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안 제8조(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소득·고용 등의 영역과 연계된 교육불평등 지표를 조사·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득분위별 자녀의 진학 및 진로 상황
2. 소득분위별 자녀의 임금 격차
3. 소득분위별 자녀의 대학 유형에 따른 일자리 임금 수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불평등 지표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교육불평등 지수를 개발·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부칙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184